

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16-92호

「대전광역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31일

##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 대전광역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조례안 예고

#### 1. 제정이유

대전광역시가 보유·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에게 공공데이터를 이용할 권리를 제공하고, 민간의 공공데이터 이용을 확대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대전광역시 공공데이터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 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다.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라. 공공데이터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3. 의견제출

가.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의장(참조 : 행정  
자치수석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5242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실)

(전화 042-270-5124, FAX 042-270-5029, E-mail : pil6969@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 4. 제정 조례안 : 붙임

## 대전광역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가 보유·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에게 공공데이터를 이용할 권리를 제공하고, 민간의 공공데이터 이용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데이터심의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공공데이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의 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
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 중단 및 중단사유 해소·조치
3.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개선, 민간 협력
4. 그 밖에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

## 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의원과 공공데이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담당관이 된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사업) ① 시장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의 성공사례 발굴·포상 및 홍보

2.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포럼 및 세미나 개최

3. 그 밖에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공공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을 촉진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시장은 공공데이터의 적절한 품질수준의 확보와 제공 촉진을 위하여 품질 진단·평가, 개선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제9조(공공데이터 관련 교육) 시장은 건전한 공공데이터 이용문화를 조성하고 공공데이터의 오용·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시장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정책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 령

##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2.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
  - 나.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보 중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
  - 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전자기록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기록물
  -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3.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란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내용 또는 내부 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4. "제공"이란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제27조(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등) ①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공데이터를 제공받고자 하는 이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공공기관의 장 또는 활용지원센터에 공공데이터 제공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활용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소관 공공기관에 이첩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데이터가 제17조제1항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④ 공공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공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⑤ 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공 방법·절차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제18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목록을 등록하여야 한다.
- ⑥ 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거부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거부결정의 내용과 사유를 신청인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공공데이터의 제공중단)**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제19조에 따라 공표된 공공데이터의 이용요건을 위반하여 공공기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공데이터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
  3. 공공데이터를 범죄 등의 불법행위에 악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관리 및 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제29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가 정하는 경우
-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로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목록 제외 요청을 한 경우 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 전에 제공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이용자는 중단사유가 해소된 후 다시 제26조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다.
- ④ 그 밖에 공공데이터 제공중단의 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공공데이터의 제공중단 절차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공중단 결정의 내용과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중단을 통보받은 이용자가 법 제28조제3항

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다시 제공받으려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단사유 해소 및 그 조치사항을 증명하는 자료를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이용자가 제출한 중단사유 해소 및 그 조치사항을 검토한 후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시 공공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